



위임장

위임인(갑) : 고객

수임인(을) : AIRREFUN

갑은 을에게 항공 클레임 보상관련 전권을 위임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에 동의합니다.

[제1조] 보상은 규정(EC) No 261/2004에 의거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 청구 및 보상대상항목은 탑승거부, 취소,지연 등이다.

* 보상에는 규정(EC) No 261/2004를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한다. 단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영역(지역)의 경우에는 해당 관할 법원이나, 국가기관에서 정한 배상 규정에 따라. 보상함을 원칙으로 한다.

[제2조] 을은 보상금이 완전히 지급될 때까지 청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수행할 수 있으며, 독점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.

- ① 을은 보상금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자료를 갑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자료 미제출시 사건의 임의 종결이 가능하다.
- ② 을은 갑을 대신하여 보상을 위해 항공사와 협상을 수행할 수 있다.
- ③ 을은 갑을 대신하여 사건 관련 모든 정보를 항공사 또는 관계 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을은 갑을 대신하여 보상금을 대리 수령하며, 갑은 을의 동의 없이 항공사에 직접 접촉하거나,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는다.
- ⑤ 을은 정해진 약관에 따라, 보상을 목적으로, 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[제3조] 수수료 및 보상금 정산

- ① 보상금 수령을 위한 을의 용역으로 갑은 보상금의 25%(부가세별도) 금액을 지불하며, 을은 보상금 총액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고객의 계좌에 지불하여야 한다.
- ② 을이 이미 용역을 제공하였고, 제2조 ④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항공사로부터 직접 보상금을 수령한경우 갑은 위 제3조 ①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.